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51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원이 · 오세희 · 서삼석
허종식 · 위성곤 · 김한규
서영교 · 이해식 · 김남근
서영석 · 최혁진 · 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물질의 제조·수입·수출·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

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을 “거짓으로 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u>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제30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2. ----- <u>거짓으로 한 -----</u>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2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